

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0일		
신청자	기관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
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		
	주소					
취급기관	기관명		사업자등록번호		대표자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		
	주소					
	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(관리책임자)		성명(직위)		전화번호	
	생물테러감염 병병원체 취급자		성명(직위)		전화번호	
	취급시설	안전등급	[] BL1	[] BL2	[] BL3	[] BL4
		주소				
		시설등록번호				
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	병원체 명칭		종속명			
			보통명			
	병원체 특성(혈청형, 독소형, 유전자형 등)					
	병원체 검사 방법					
보유경위	[] 분리 [] 제작 [] 국내분양					
보유목적	[] 연구 [] 생산 [] 보존 [] 그 밖의 목적()					
보유기간	20 . . . ~ 20 . . . (년)			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자 (직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1부	수수료 없 음
	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·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1부	
	3.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·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1부	

작성 방법

- 이 신청서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정보가 신청자 정보와 동일한 경우에는 '상동'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유기간이 영구일 경우에는 시작 일자만 기재하고 '영구'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서류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는 보유 목적, 보유 방법,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,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분리계획 또는 분리경위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.